'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'

화학물질의 제조 등의 보고 제도 안내

보고대상

전년도(1.1~12.31) 제조·수입·판매한 다음의 화학물질(물질 기준)

신규화학물질 : 수량에 관계 없이 보고 대상
기존화학물질 : 제조·수입·판매량 또는 제조+수입량이 각각 연간 1톤 이상의 물질

Ex) Sodium hydroxid의 연간 제조량:500kg, 수입량:600kg 인 경우 → 제조·수입 보고대상

보고내용

업체 기본정보 : 상호명, 사업자등록번호, 소재지, 연락처
화학물질 정보 : 화학물질명(영문), 용도 정보(55개 용도체계), 고유번호(CAS No 등), 수입량

보고주체

제조 : 제조자(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자)

제조 X : 단순혼합, 소분, 합금, 희석 행위 → 보고대상 아님
제조 O : 화학적 합성 등을 통한 제3의 화학물질을 만드는 행위, 분리·정제·추출, 분리중간체 제조
→ 보고대상 제조

수입 : 수입자(관세법 제19조에 따른 납세의무자)

판매 : 화학물질을 사업장에서 원료로 사용하는 자에게 판매하는 자
(화학물질을 사업장에서 소비하는 자에게 판매하는 자와 소비자에게 제품을 직접 판매하는 자는 제외)

보고제외 화학물질 판단

근거	조건
유출누출 우려가 없는 취급형태의 화학물질	· 기계에 내장되어 수입 · 시험운전용으로 기계 또는 장치류와 함께 수입 · 특정 고체 형태로 일정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에 함유되어 그 사용 과정에서 유출 없음
위해성이 매우 낮다는 충분한 정보가 있는 화학물질	환경부장관 고시 제2014-239호, 별표1,2 ← 파일첨부 위의 고시된 기존화학물질이 물과 함께 결합하여 형성된 수화물 또는 수화 이온
조사용·연구용 화학물질	시약 등 과학적 실험·분석 또는 화학연구를 위하여 제조·수입 연구 개발용으로 제조·수입
비분리중간체	다른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생성되어 그 화학공정에서 전량 사용되는 화학물질로서 제조되는 설비로부터 의도적으로 제거 분리되지 않는 화학물질

보고대상 화학물질 취급량 산정

단일물질 :

Potassium hydroxide(수입량:989kg, 제조량:489kg, 판매량:1,008kg)
제조+수입=1,478kg, 판매량:1,008kg → 제조·수입·판매 보고

혼합물질 :

물질A : 수입량:195kg, 판매량 : 1,704kg
구성 물질 : Silicon dioxide 9%, Calcium stearate 6%,
Isopropyl alcohol 85%

Silicon dioxide : 수입 17.55kg, 판매 153.36kg
Calcium stearate : 수입 11.7kg, 판매 102.24kg
Isopropyl alcohol : 수입 165.75kg, 판매 1,448.4kg

Isopropyl alcohol 판매 보고 대상

보고방법

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통한 온라인 제줓
http://kreachportal.me.go.kr 접속 후 보고서 입력

화평법 별지 제1호 서식 통한 서면 제출
원본을 등기우편으로 제출

전년도 실적이 없거나 보고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(비대상 사업장)
비대상 사업장 조사표를 작성하여 각 지방환경관서 화학안전관리단으로 제출

제출기한 및 벌칙

보고 기한 2017년 6월 30일까지 지방환경관서 장에게 보고

미보고 또는 거짓으로 보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
벌금(화평법 제51조 1항)